

울산지방법원 2022. 6. 24 선고 2022가단1093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박AA 외 1명

판 결 선 고

2022. 6. 24

주 문

1.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. xx. xx. 체결된 각 xx,xxx,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,xxx,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○○○